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973
----------	-------

발의연월일 : 2021. 10. 26.

발의자 : 오영환 · 강병원 · 강준현

김병기 · 김홍걸 · 문정복

신현영 · 윤준병 · 이개호

이병훈 · 임오경 · 장철민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위험물 화재 등 위험물 사고는 인화성 및 발화성이 높은 특정 화학 물질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예측할 수 없는 대형 화재·폭발로 이어져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국가위험물정보시스템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2016년~2020년) 350건의 위험물 사고로 311명의 사상자(사망 66명, 중상 85명, 경상 160명)와 807억 9,9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는바, 위험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은 물론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도 위험물 안전관리 기술개발에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 또는 운반하는 관계인으로 하여금 위험물 안전관리의 기술개발과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 신설).

##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④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소방청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 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소방청장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

## 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  
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29조의2(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의 안전관리,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기술 개발, 그 밖에 위험물 안전관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p> <p>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p> <p>③ 협회의 업무는 정관으로 정한다.</p> <p>④ 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p> <p>⑤ 소방청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p> <p>⑥ 소방청장은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p>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은 경우

2. 법령의 개정 등 사정이 변경  
되어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  
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⑦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한다.